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정춘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58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29.

발 의 자 : 정춘생 · 최민희 · 서왕진
황운하 · 이해민 · 이상식
문대림 · 김준형 · 박은정
강경숙 · 김재원 · 백선희
김선민 · 차규근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함. 그런데 현행법의 차별적 내용에 대한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 · 신고 · 금지 ·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, 그러한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거없는 모욕이나 비방인 경우 등에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인종 · 출신국가 · 지역 · 종교 ·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, 정

당의 현수막에 대한 제한 적용배제의 요건을 강화함(안 제8조제1항제8호라목 신설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958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5호 중 “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”을 “인종·출신 국가·지역·종교·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8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「정당법」 제37조의2에 따른 현수막 표시 제한을 준수할 것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5조제2항제5호 및 제8조제1항제8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수막을 표시·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금지광고물등) ① (생략)	제5조(금지광고물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(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)하여서는 아니 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<u>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</u>	5. <u>인종 · 출신국가 · 지역 · 종교 ·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</u> ----- -----
6. (생략)	6. (현행과 같음)
제8조(적용 배제) ① 표시 · 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 · 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 · 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제3호는 표시 · 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.	제8조(적용 배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7. (생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정당이 「정당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·설치하는 경우. 다만, 현수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 가. ~ 다. (생략) <u><신설></u> ② (생략)	8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.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<u>라. 「정당법」 제37조의2에 따른 현수막 표시 제한을 준수할 것</u> ② (현행과 같음)
--	--